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그 운명은?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부국장

건설현장에서 30년간 미장공으로 일한 김아무개(56)씨는 병원에서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지난 8월 산재 신청을 했다. 하루 6~7시간 쪼그려 앉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고 무거운 시멘트 포대도 날랐던 그는 당연히 산재로 인정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일단 내년 2월 특별진찰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며 기다리라 했다. 김씨는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 그는 노동단체 도움을 받은 뒤에야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산재 처리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근골격계질환 추정 원칙’의 무용론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뇌혈관 또는 심장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곧잘 들린다. 실제로 2022년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 건수 1만2,491건 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은 겨우 468건(3.7%)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저조할까.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은 특정 직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목, 어깨, 팔꿈치, 허리 무릎 등 질병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과 업무 간 관련성이 강하다고 추정하고 판정 절차 일부를 생략해 신속하게 보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상병과 업무 간 상관관계가 대체로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태워 산재 노동자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취지다. 2019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다가 2022년부터 노동부 고시로 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건설현장 미장공, 조선소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 수거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5년 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둔 지 '12개월 이내'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상질병으로 추정 가능하다.

그런데 30년 건설 미장공으로 일했던 김씨 사례처럼 공단에서 이런 제도를 먼저 안내하는 경우는 드물다.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도록 한다. 공단 자문의가 소견서를 제출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산재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추정의 원칙 도입 이후에도 특별진찰 대기기간만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5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 현장 일각에서는 특별진찰이 산재병원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까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재병원이 없는 울산에서는 창원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해 원성도 높다.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을 둘러싼 갈등

특별진찰을 받은 뒤에도 문제는 이어진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 현장 재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측이 산재 판정의 공정성을 계속 지적하면서 이런 제도의 취지도 희석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근골격계질환 산재 468건 중 73.7%(345건)가 현장 조사를 거쳤다.

최근 노사 모두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제도를 둘러싸고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한국경총은 지난 8월 토론회를 열고 “추정의 원칙 적용으로 (산재 처리) 신속성 개선보다 공정성 훼손 부작용이 두드러진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건의서’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제도가 공단 지침에서 노동부 고시로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며 적용 직종 범위를 넓히고, 고시에서 규정한 근골격계 상병을 포함한 다른 상병이 동반해 발생한 경우에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말까지로 정한 노동부 고시에 대한 검토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산재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지만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단지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